

#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최윤희 의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최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 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급식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학교 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학교 급식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의 노후화, 부족한 안전 설비, 불충분한 환기 시스템은 급식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급식종사자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조리실의 작업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식종사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5조에 학교 급식실의 안전한 조리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4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안 제7조에는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에는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과 급식종사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 주방에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이 23년 12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 제13조는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관리 지원 및 전문성 향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급식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위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학교 급식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식종사자들은 개선된 작업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